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85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광희 · 안태준 · 박홍배
서미화 · 전진숙 · 김문수
박정현 · 이주희 · 임미애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야간 시간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됨.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요소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이 공중화장실등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정보를 수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이 공중화장실등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시간,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정보를 수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